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드합200827 이혼등
원 고	오AA (-2)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1. 노BB (-1) 부산 2. 임CC (-2) 부산 3. 노DD (-1) 부산 4. 김EE (-2) 부산 피고 1. 3.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 건 본 인	노FF (-4) 부산
변 론 종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 노BB은 이혼한다.
2. 피고 노B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임CC, 노DD, 김EE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 노BB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와 피고 노B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노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임CC, 노DD, 김EE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4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2014. 9. 25.자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노BB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7. 1.부터 2033. 4. 7.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노BB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노BB은 2005.경부터 교제하다가 2010. 10. 23.경 결혼식을 올린 후 2012. 10. 8.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2) 피고 노BB은 2009.경 원고와 교제하고 있던 중임에도 피고 임CC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3. 6. 15. 피고 임CC와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피고 노BB은 위 결혼식에서 하객대행자들을 고용하여 부모인 피고 노DD·임CC 및 친족들인 양 행세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3) 피고 노BB은 2012. 7.경부터 원고에게는 지방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 임CC를 만나 잦은 외박을 하였고, 피고 임CC와 결혼식을 올린 2013. 6.경부터는 원고에게 주중에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말에는 원고와 생활하고 주중에는 피고 임CC와 생활하는, 소위 '두집살림'을 하면서 2013. 11.경 피고 임CC와 사이에 딸 노GG을 두었다.

4) 원고는 2014. 6. 16.경 피고 노BB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고 노BB이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 노BB은 원고로부터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5) 피고 노BB은 다음날 원고와 함께 살던 집을 나갔고 이후로 원고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피고 노BB은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몰래 원고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권(전세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22.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3. 10. 15. 채권최고액 20,8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 11, 12, 20, 21호증, 을가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피고 노BB에 대한 위자료 청구 : 100,000,000원

[판단근거]

① 원고와 피고 노BB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은 위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 노BB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피고 임CC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낳은 점, 피고 노BB은 임의로 원고와 함께 살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 원고와 피고 노BB의 부부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② 위자료 액수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노BB은 원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 임CC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무렵에는 피고 임CC와 사이에 아이를 가졌으며,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무렵에는 원고와 사건본인을 돌보기는커녕 지방근무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 임CC와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이중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그때부터 1년여 동안 원고를 속이면서 피고 임CC와 사실상 혼

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 노BB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몰래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불상의 용도로 그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는 등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계를 도외시한 점, 피고 노BB은 원고에게 피고 임CC와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발각되자 오히려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노B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하였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노B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고, 피고 명의의 재산은 대출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노BB은 이혼하고, 피고 노B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임CC, 노DD, 김EE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임CC가 원고와 피고 노BB의 혼인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었고, 피고 노DD, 김EE는 원고와 피고 임CC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

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임CC, 노DD, 김EE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친권자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노BB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양육비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 노BB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노BB이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의 액수

원·피고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BB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임CC, 노DD, 김E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